

의료법 상 간호정책 동향과 간호 대책 추진경과



목 차

01 의료법과 간호정책 동향

02 간호사 근무환경 및
처우개선 대책 추진경과



01

의료법과 간호정책 동향



간호인력 양성제도 변천

- 1903년 최초의 간호사 양성기관인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 설립 (현 이화여대 간호학과 전신)
 - 1906년 세브란스 간호학교 개설



- 1946년 3년제 고등간호학교로 교육과정 변경
- 1955년 간호학과 4년제 전환 (이화여대 간호학과)
 - 1957년 연세대 간호학과, 1959년 서울대 간호학과 설치

간호인력 양성제도 변천

- 1967년부터 ‘간호보조원’(현재의 간호조무사)이 **법정인력**으로 배출 시작



-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간호대학의 4년제 일원화 개시
 -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, 학사학위를 수여하게 하여 기존 3년제 전문대학이 4년제로 전환
(전문대학에 설치된 간호학과는 86개소이며, 이 중 84개소가 4년제로 전환)

의료법 및 간호정책 변천

- ('62년) 국민의료법(51년 제정) → **의료법 제정. 간호원 임무, 면허요건 등 규정**
제7조 (간호원의 임무) 간호원은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영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그 임무로 한다
- ('73년) **'분야별 간호원(보건, 마취, 정신)' 조항 신설** (현재의 전문간호사 제도)
- ('87년) **의료법 개정으로 간호 관련 면허·자격의 명칭 변경**
* (종전) 간호원, 조산원, 간호보조원 → (변경 명칭) 간호사, 조산사, 간호조무사
- ('00년) **'분야별 간호원' → '전문간호사'로 명칭변경**
- ('11년) **간호사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의무화 법안 개정**
- ('12년) **간호대학 평가인증과 면허 국가시험 자격을 연계하는 법률 개정**
* 평가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국가시험 응시 가능 (2017년 시행)

○ ('15.12월) 간호사·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,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

5.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.

가.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, 자료수집,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

나.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

다.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·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,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

라.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

○ ('17.2월) 평가인증과 국시응시자격 연계제도 시행

○ ('18.3월) 복지부에서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「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」 발표

*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수가 개선 및 근무형태 다양화, 건전한 병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 방지,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입학정원 확대, 전문간호사 활성화 등

○ ('19.2월) 복지부 내에 간호 인력 수급관리, 업무범위, 배치기준, 양성체계,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을 전담하는 「간호정책TF」 신설

간호사 면허 개요

의료법 상 간호사 역할

구분	내용
근거법률	「의료법」 제2조 제2항 제5호, 제7조
역할·기능	가.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, 자료수집, 간호판단 및 요양 을 위한 간호 나.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.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·상담 및 건강증진 을 위한 활동 의 기획과 수행,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. 간호조무사 가 수행하는 업무보조 에 대한 지도
국가시험 응시 자격	1.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.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과 졸업 후 외국 간호사 면허 취득자
간호학과 관리	교육부의 간호학과 정원 배정 및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의 간호학과 교육과정 인증
양성 현황	일반대 118개소, 전문대 86개소(4년제 84개) (’11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 간호학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, 기존 3년제 전문대학을 4년제로 전환 중)

의료법 상 다른 직종과의 비교

의료인 및 간호조무사

- 의료인 직종 (의료법 제2조 제2항) (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인에 비해 범위 좁음)

의료인 직종	업무 (의료법 제2조 제2항)
의사	의료, 보건 지도
치과의사	치과 의료, 구강 보건지도
한의사	한방 의료, 한방 보건지도
조산사	조산,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및 양호지도 ※ (요건) 간호사 면허 취득 → 1년간 조산 수습 과정 이수 → 국가시험 합격
간호사	간호, 진료 보조, 교육·상담 및 건강 증진, 간호조무사 지도 가.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, 자료수집,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. (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) 진료 보조 다. (간호요구자에 대한) 교육·상담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 및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(보건진료소, 결핵환자 조치 등) 라.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

의료법 상 다른 직종과의 비교

의료인 및 간호조무사

○ 간호사와 다른 의료인의 차이

- 간호사는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

의료인 직종	개설 가능한 의료기관			
의사	종합병원	병원	요양병원	의원
치과의사	치과병원			치과의원
한의사	한방병원		요양병원	한의원
조산사				조산원

- 간호조무사 → 간호사 업무 보조 +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, 진료 보조
 - (요건)특성화고 간호조무사 양성학과 또는 1년간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이수
→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후 합격

간호사 업무 범위

의료법 상 간호사 역할

- 간호사 업무범위 구체화 (의료법 제2조 제1항 제5호)
 - 간호사 업무범위에 간호과정 및 간호조무사 업무보조 명시적으로 규정 (2015년 의료법 개정)

이 전	개정안
제2조(의료인) ① (생략) 5. 간호사는 상병자(傷病者)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.	제2조(의료인) ① (생략) 5.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. 가.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, 자료수집,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.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.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·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,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.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

〈참조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)

1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(예방접종, 환자 이송 등 경미한 의료행위)
2.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(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)
3. 「결핵예방법」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(결핵환자에 대한 조치)
4.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

간호사 업무 범위

판례의 입장

○ 진료 보조 : 수행 가능

- ‘진료의 보조’라 함은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로 되어 진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시에 따라 옆에서 보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, 진찰 또는 시술의 준비나 정리, 진찰 또는 시술중의 순수한 조력행위, 근육주사를 놓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.(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5노1994)
- 의료법 제2조에서 의사는 의료에 종사하고,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.(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08도8606)

간호사 업무 범위

판례의 입장

○ 진료행위 자체 : 수행 불가

-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,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,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. (대법원 2007.9.6. 선고 2006도2306)

○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판단 요건

-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가 아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라 함은, ① 그 문제된 행위 자체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혹은 부작용, ② 그 부작용에 따라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 유무, ③ 환자의 진료 당시의 신체 상태, ④ 문제된 행위가 의사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교육기간의 장단 및 간호사의 정규 교육 혹은 실습과정에도 중복하여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. (인천지방법원 2011. 12. 13. 선고 2010고정6026)

참조 : 의료법 판례정리(여정현 저, 2019)

의료법 상 간호 관련 쟁점

쟁점 및 입법 과제

-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간호사 양성학과 신설 문제
 -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에 한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
 - **신설 대학이나 신설 학과 등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여 국가시험 응시 어려움**
(고등교육법 상 평가인증 대상은 '교육과정을 운영'하는 대학이므로 신설대학에 평가인증 불가)
※ '18년 입학생부터 적용 ('17.2.2. 개정 의료법 시행)
- **신설대학 졸업생이더라도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**
- ※ 평가 인증을 받기 전 입학한 경우도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자격 부여

의료법 상 간호 관련 쟁점

쟁점 및 입법 과제

-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정비
 - 2018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0년까지 「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」 개정 필요
 - 자격기준, 자격시험, 분야별 업무범위 등을 시행규칙에 정하여야 함

02

간호대책 추진 경과

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내용
건강보험 수가 개선
가이드라인 마련
홍보
법령 제·개정
기타 과제



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

'18.3.20. 발표

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

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

- 적정 처우 보장을 위한 기반조성
- 야간근무 부담 완화 및 보상 강화
- 교대제 개선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

건전한 병원조직 문화 조성

- 간호사 태움 등 인권침해 방지
-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

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

- 간호인력 공급 확대
- 취약지 적정 간호인력 배치
- 간호 실습교육 질 제고

간호서비스 질 제고

-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
-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
-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 및 질 관리

전담 TF 운영,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

건강보험 수가 개선

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수가 조정

-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('18년 4월)
 - 지방·중소병원의 간호수가 산정기준을 개선(병상 수 → 환자 수)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처우개선(임금 상승 또는 복리후생 개선)에 사용하도록 지침 마련
 - (대상) 간호관리료 차등제 선정기준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된 요양기관
 - (조건) 간호등급 상향되어 추가수익 발생하는 경우
 - (추진 상황) 간호수가 산정기준 개선 및 가이드라인 배포 ('18.4월)

건강보험 수가 개선

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수가 조정

- 시간제·야간근무 간호사 처우 개선 ('19년 목표, 일부 완료)
 - 시간제, 야간근무 간호사 보상강화 위한 **수가기준 합리화 및 야간근무 간호사 수당 지원**
 - (추진상황) 시간제 간호사 보상 강화('19.1. 시행), 야간간호 수가 확정('19.5.)
 - (향후계획)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및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개선 ('19년 10월 시행예정)

가이드라인 마련

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

-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제정 및 배포 ('18년 12월)
 - ① 병원 내 인권침해 사례, ② 사전예방 및 교육, ③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, ④ 의료기관 내 대응체계 구축방안 등
 - (추진상황) 병원협회와 협업하여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, 1,800여 개 병원에 배포 ('18.12월~)



가이드라인 마련

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

-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구축방안 마련 ('19년 9월 목표)
 - ①교육관리체계 구축 방안, ②적정 교육기간 및 단계별 교육내용, ③교육담당자 양성, ④교육프로그램 평가방안 등
 - (추진상황) 신규간호사 교육현황 조사('18.7~8월, 89개 병원), 해외사례 분석,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('18.10월) 및 실무협의체 논의('18.11월, '19.1월,4월)
- 교육전담 간호사 인건비 지원 ('19년 5월, 진행 중)
 - 국공립병원 대상 **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** 시범사업 실시
 - * 신규간호사 대상으로 교육 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

가이드라인 마련

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

- 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('19년 상반기 목표, 진행 중)
 - 대형병원의 신규자 대기리스트 보유관행 개선 통해 지방·중소병원들의 안정적인 간호사 채용 유도
 - * 대형병원에서는 높은 신규간호사 이직문제로 상시 고용 가능한 대기리스트 보유
- (추진상황) 대형병원 대상 실태조사('18.6~7월), 대형·중소병원 관리자 및 이해단체 간담회('18.7~8월),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및 방향 논의('19.2월)
4개 병원 동시 신규간호사 채용 실시('19.7.16~18.)
※ Big5 중 4개 병원(서울대, 삼성서울, 서울아산, 세브란스)

야간근무 간호사 처우개선

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마련

-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('19년 중 예정)
 - 야간근무자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**휴식·휴게시간 보장, 근무선택권 보장, 최대 야간근무일수 제한 등 지침 제정**
- (추진상황) 유사 지침(간호간병통합서비스), ILO 권고사항 등을 고려한 간호실무협약체 논의('18.11월, '19.1월, '19.4월) 및 표준운영지침 초안 마련('19.4월)

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

○ 간호사 인식개선 홍보

- 간호사 존중문화 조성 위한 **대국민 인식개선, 태움 등 직장내 괴롭힘 방지 위한 조직문화 개선교육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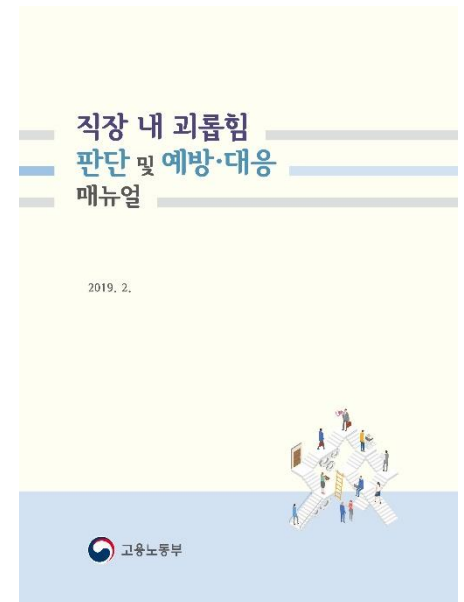
- (추진상황) 카드뉴스 제작·배포 및 공모전 통한 **우수 동영상과 슬로건 발굴**(’18.12월)
광고 동영상 배포 (유튜브 딩고 채널, ’19.1월)
광고 포스터 제작 및 배포 (6개 광역시 버스 외부 및 정류장, 3,500여개 병원, ’19.2월)



법령 제·개정

병원 내 인권침해 대응 및 근무환경 개선

-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법적 근거 마련 ('19.7월, 진행 중)
 -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신설한「근로기준법」개정 ('19.1월 개정, 7월 시행)
 - (내용)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,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등
 - (추진 상황) 법률 관련 세부사항 매뉴얼 제작·배포 ('19.2월, 고용노동부)



법령 제·개정

병원 내 인권침해 대응 및 근무환경 개선

- 의료인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('19.4월)
 - **의료법 개정('19년 4월 국회 본회의 통과)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한 의료기관 환경 구축**
 - (내용)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**가중 처벌(기존 5년 → 7년 이하의 징역)** 및 **음주 상태의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**

법령 제·개정

병원 내 인권침해 대응 및 근무환경 개선

-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('19년 4월)
 -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정('19년 4월 국회 본회의 통과)을 통해 간호인력 포함 보건의료인에 대한 수급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근거 규정 마련
- (주요내용)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·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, 보건의료인력 인권보호·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·지원

기타 과제

간호대 정원 및 편입 확대

○ 간호대 정원 및 편입 확대

• 간호대 정원 확충과 함께 학사편입 규모를 확대하여 간호인력 공급 확대

- (입학정원) 교육부에 2020년 입학정원 700명 증원

('18년 19,683명 → '19년 20,383명 → '20년 21,083명)

- (학사편입) 학사편입 제도를 4년제 간호학과 전문대학까지 확대*하고, 학사편입 규모를 現 학과 정원의 10%에서 30%로 확대 ('18.10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)

* 간호학과 : 일반대 118개소, 전문대 86개소(4년제 84개)

기타 과제

각종 평가지표 개선

- 각종 평가지표 개선
 - (평가인증) 의료기관 **평가인증 지표**(^{19년 적용})에 **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여부** 신설 (^{18.4월})
 - * (기준) 폭력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, 폭력예방활동 수행, 상담 및 신고절차 안내 충족
 - (의료 질 평가) **경력간호사(3년 이상) 비율에 따른 가중치 부여**(^{19년})
 - * (기준)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 중 동일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비율 산출

-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('18년 4월~)
 - 의료취약지 내 간호인력 채용에 대해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시범사업 추진 중
- 간호대학 실습교육 기능보강 지원 ('18년~)
 - 국공립 간호대학에 대한 실습교육장비 지원 (신규, '18년 8개소)
올해 민간 간호대학까지 확장하여 추진 예정 ('19년)
- 보건복지부 내 간호 전담부서 설치 ('19년 2월~)
 - 간호대책 이행, 기타 간호정책 업무를 전담할 간호정책 TF 구성 ('19.2월)



감

사

합

니

다



보건복지부